

# 북한인권

## - 주제논객 -

- 이성훈; 북한인권과 동북아평화-시민사회와의 역할
- 이성훈; 북한인권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유엔인권위; 2003 대북결의안 초안
- 북한 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 북인권문제의 성격과 해결방향; 이창조
- 이원용;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 정태우; 북한과 인권을 위해 대화하기
- 정태우; 북한 체제와 인권문제의 논의에 단서를 불이며
- 박준성;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유엔인권위 북한결의안 2003.4.16
-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수( 좋은 벗들)
- 왜나면 토론; 인권의 토대는 생존권(이동건)
- 북인권보다 핵해결이 우선(경향신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
- 누구를 위한 북한인권인가? 회영성/봉일세상을 열어가는 관학청년회 회원)
- 북한인권의 전략적 접근법(이창조)
- 북 인권 외연도 그만(조국)
- 북인권, 정략적 접근발라(정옥식)
-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은 도전이자 기회(이성훈)
- 북 인권개선 '미용 권리'부터(김재홍, 경기대 교수 남북한 정치)
- 북인권 논란의 절과 속(경향신문 정치부 김진호)
-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위원)
- 김대중 활동(조선일보, 위성현에서-이제는 핵보다 인권이다)
- 사설 미국 의회의 북인권관심(문화일보)
- 황장엽이 본 북과 북핵(문화일보; 김정인 한양대 국제정치 교수)
- 북한인권, 진보세력이 나서야(허만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 등 신문사설. 칼럼, 기고
- 북한인권 논의의 함정(김근식;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7

## 한국인권재단 2003년 평화회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 대안답론과 대안정책

### 북한인권과 동북아 평화 - 시민사회의 역할

이성훈 [leesh@paxromana.int.ch](mailto:leesh@paxromana.int.ch) 팩스 로마나, 제네바

#### 차례

1. 북한인권 - 왜 지금 어떻게?
2. 북한인권의 현실과 이슈
3. 북한인권을 둘러싼 쟁점
4.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전략적 접근
5.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전략
  - 참고문헌
  - 북한 인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월간 사목 2003 호 8월호)
  -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 채택 북한인권 결의안 (한글 번역)

#### 1. 북한인권 - 왜 지금 여기서?

- 1) '북핵위기'와 6자회담
- 2) 2003년 유엔 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 3) 정전협정 50주년과 비엔나+10

#### 2. 북한인권의 현실과 이슈

- 1) 시민정치적 권리
-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기아
- 3) 발전권
- 4) 북한 탈출 난민 (탈북자)
- 5) 북송교포와 북한 억류자 송환
- 6) 외국인 피납자 (일본)

#### 3. 북한인권을 둘러싼 쟁점

- 1) 인권-통일-평화의 상호연관성
- 2) 주권의 절대성과 인권의 보편성
- 3) 이데올로기의 적설성과 전략의 실효성
- 4)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 4.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전략적 접근

- 1) 보편성
- 2) 불가분성
- 3) 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 4) 피해자주권

#### 5.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전략

##### 5.1. 다자간 포괄적 메카니즘

- 1) 다차원적/포괄적 의제 (multi-dimensional comprehensive agenda, package)
- 2) 다자간 인권외교 (multi-lateral human rights diplomacy)
- 3) 다자간 이해당사자 대화 (multi-stake holders, multi-track diplomacy, new diplomacy)

##### 5.2. 주요 행위자의 역할

- 1) 북한
- 2) 한국 - 정부, 시민사회(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
- 3) 국제사회 - 정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정부 등) 및 국제 인권단체
- 4) 유엔 인권관련 기구
- 5) 기타

## 1. 북한인권 - 왜 지금 어떻게?

- 북한인권은 뜨거운 감자 그러나 대응에 따라 쓴 보약 또는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다.
- 북한인권은 인권(국가), 통일(민족), 평화(체제)을 고려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 1) 2003년 한반도

- 정(휴)전협정 50주년
- 비엔나+10(세계인권선언 1948년, 태헤란 세계인권회의 1968,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3)
- 북경 6자 회담(8월 27일) - 인권의제와 동북아 시민사회의 역할/입장

### 2) 2003년 유엔 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결의안 채택을 둘러싼 네 가지 의문과 한가지 '논란'

- Why North Korea? 중국 및 이란 결의안은 포기(?) 이중잣대
- Why UN CHR? 유럽과의 쌍무대화대신 유엔을 택한 이유는?
- Why EU? 미국 대신 유럽연합이 나선 이유는?
- Why Now? 이라크 전 직후에 북한 결의안? 음모론
- 한국정부의 표결 불참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전략적 선택인가 무전략의 결과

#### 채택의 의미

- 남북/민족 또는 북미/북일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의제로 확대
- 볼 것인가?(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실천)으로 발전
- 남한 인권운동의 다양화/분열 - 의제와 주체(보수적 시민사회는 인권(반핵, 반북), 진보적 시민사회는 평화(반전, 반미)로 양분)

#### 결의안 내용에 대한 비판적 평가

- 객관성 - 인권 침해의 국내외적 요인에 대한 불균형적 접근(환원주의의 편견 또는 원인과 책임의 비대칭성)
- 정당성 - 결의안 제출국의 이중잣대, 인권의 도구화/정치화
- 실효성 -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보호 (몸통과 깃털론)

### 3)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상반된 시각

|        | 유보/반대   | 찬성   |
|--------|---|--|
| 특수성    | 북한인권을 서구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 유엔의 국제기준으로도 북한의 인권은 심각하다.                        |
| 환원주의   | 북한인권은 경제문제, 미국의 경제봉쇄정책 때문이다                     | 주체사상과 전체주의 체제자체에서 기인한다                           |
| 정치화    | 정치적 목적(체제붕괴, 반정부)으로 북한인권을 이용하지 말아야              | 정치적 목적/이념적 이유로 북한인권 현실 외면하지 말아야.                 |
| 남북대화   | 남북대화 진전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 북한인권이 대화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
| 자료와 정보 | 인권실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 (접근권)                          | 기존의 조사와 정보로도 충분하다. 북한당국은 접근권 최대한 허용해야            |
| 개선 수단  | 마땅한 개선의 수단이 북한내에 없다. (시민사회 부재)                  |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                                  |
| 시기상조론  | 따라서 나중에 상황과 조건이 무르익을 때. 지금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에 초점. | 지금 당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다리는 것은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외면과 방기이다. |

### 4) 북한인권문제의 공개적 거론이나 제기를 '꺼려하는' 인권단체의 논리

- 서방/미국의 제재나 침공의 빌미를 제공한다. (인도주의적 개입)
- 북한의 반발로 효과가 없거나 남북대화에 역효과를 초래한다. (선평화 후인권)
- 한국내 반북한 정치세력이 의도적으로 악용한다.
-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
- 단기적으로는 북한 인권 해결 없이 '동북아중심국가론', '동북아 공동체', '동양평화론' (안중근), '동북아 문명론' 등은 비현실적이다.

## 2. 북한인권의 현실과 이슈

-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정보 접근과 현 정보의 신뢰성
- 북한 인권 현실과 원인 - 북한의 정치체제 및 국제적 요인

- 1) 시민정치적 권리
-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기아와 식량권

- 2003년 유엔 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 (결의안 참조) - 고문, 식량, 종교적 불관용, 자의적 구금,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 사상 양심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수', 사형제도, 식량권, 건강권 강제노동, 장애우차별, 여성의 권리 등
- 3) 발전권
- 4) 북한 탈출 난민 (탈북자) - 인신매매, 노예제 등.
- 5) 북송교포 및 북한억류자 송환 등
- 6) 외국인 피납자 (일본)

## 3.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쟁점

### 1) 인권-통일-평화(안보) 가버넌스의 상호연관성

- 환원주의와 복합주의: 북한인권은 인권(국가)-통일(민족)-평화(체제)의 3 차 이상의 복합방정식  $(X+Y)+Z$  문제이므로 일차방정식으로 환원되어서는 안된다.
- 단계론(선평화, 선통일, 후인권)과 종합적 동시접근의 긴장과 갈등
- 국내(민족)적, 쌍무적 접근과 국제적(다자적) 접근 (6자회담과 유엔): 인권의 경우 민권(헌법)과 인권(국제인권법)의 긴장과 모순
- 남북관계 법과 정치 현실의 모순: 헌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헌법 2조와 4조,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제재 인정 존중)와 제2조 (상호 내부문제불간섭), 한미상호방위조약, 6.15 남북정상회담 등)
- 국제법과 국내법: 국제인권법과 조약,
- '북핵위기'와 인권: 협상 이전, 과정 및 이후의 인권은?
- 북한인권에 대한 전략에 도움을 주는 외국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OSCE, 미국의 대중국 인권외교전략과 중국의 대응, 미국의 쿠바 외교전략과 쿠바의 대응, 미국의 대베트남 정책과 베트남의 대응, 미국의 이라크와 이란 정책, 베트남의 인권외교전략, 남아공의 짐바브웨 인권 정책 등.
- 2) (국가)주권 절대성과 인권의 보편성
  - 인권의 보편성이 인권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지상주의/절대주의의 종속변수이야.
  - 인권을 국가이익의 요체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 국가안보는 인간안보와 인권보호의 개념.
  - 주권의 상호인정과 인권의 보호를 함께 수용하는 법적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절대성은 이미 낡은 개념.
  - 남한은 주권국가인가? 영토내의 물리력의 독점을 주권이라는 의미에서.
- 3) 이데올로기의 적실정과 전략의 실효성

| 형태                                     | 목표와 내용  |
|--|---|
| Humanitarian intervention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 정권교체 (regime change)  |
| 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주의적 지원       | 비정치적 접근, soft landing   |
| Humanitarian engagement 인도주의적 포용과      | 포괄적 안보 comprehensive security, 경제협력, '시장을 통한 평화', Human rights mainstreaming 인권의 주류화, 인권적 접근 (right-based approach), soft landing |
| Humanitarian silence 인도주의적 침묵          | 조용한 외교, status quo,   |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미국과 한국/중국의 차이는 부분적이지만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배고파 우는 아이 및 환자에 대한 상반된 태도와 접근

#### 4)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 인권절대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인권의 보편성을 한반도적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권에 대한 정치도구화된 '서구적 잣대론' 또는 '아시아적 가치'론은 생산적으로 극복될 필요가 있다.
- 서구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개인 중심의 자유주의적 인권관과 사회주의 사회의 집단적 인권론(계급, 민족)의 이분법적 접근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평화통일은 통합적 인권관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실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인권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이해의 차이 - 미국은 문화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우월감을 가지고 인권을 대하는 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수세적 입장 또는 체제옹호/정당화의 차원에서 인권을 이해한다.
- 북한 인권을 계기로 동북/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유엔이 설정한 국제적 인권기준과 부합하면서도 지역적 현실을 고려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인권기구,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 5)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 북한에서 정권교체 없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자유가 국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 즉 시민사회 부재의 상황에서 외부에서 어떤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가?
- 북한 내부의 민주화는 한미관계 및 북미관계의 민주화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전략 분석

### 4.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전략적 접근

#### 인권전략의 기본 원칙

- 인권은 목적이자 수단이다. 인권 문제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 인권은 보호와 증진 그리고 특히 인권침해 예방을 통한 보호가 중요하다.
- 인권적 접근: 민권(일국적), 국권(국익) 및 이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적이다"..."민족적 지역적 특수성과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다양성이 확실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비엔나 선언 5 항)  
이를 통해 1 단계, 2 단계, 3 단계 또는 자유권/사회권, 개인/집단 등의 인위적 구분을 극복하는 절충적 정식화에 합의

#### 1) 보편성 universal

- 인권의 보편성은 기준과 적용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 북한 인권을 대하는 이중/삼중잣대 (국내, 외국과 북한)
- All human rights for all. Human rights have no boundary. Victims have no nationality.

#### 2) 불가분성 indivisible

-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는 현실에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사회권의 침해가 자유권의 침해로 연결된다. (기아) 자유권의 제한이 사회권의 침해를 가져온다 (언론자유와 SARS)
-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아닌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 각종 경제체제 조치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 Human rights begin with breakfast.

언론자유

자체는

모든다

#### 3) 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interdependent/interrelated

- 인권, 민주주의, 평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상호연관적(inter-connected) 통합적 integral 종체적 wholistic 접근이 필요하다.
- 인권의 주류화 human rights mainstreaming 인권적 접근 right-based approach
- 인권이 인도주의적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권 대화는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라크와 쿠바의 사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제재의 철회가 북한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결정적이다.)

즉 - 인권증진이 기여하는데 있다

#### 인권과 평화/통일:

- 평화없는 인권은 맹목이고 인권없는 평화는 공허하다.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 그리고 인간안보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인권은 평화통일운동의 나침반이자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 최소한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존조건 (기아) 없이 인권의 향유가 구조적으로 제약된다. 공포로부터의 자유(안보 Freedom from fear)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기아 freedom from want)는 인권이자 보편적 인권 향유의 전제이다. 국가(자결권)없이 인권없다? 평상시와 비상시의 인권운동.

언론자유

인권

평화  
인권

- 평화운동이 회색의 아날로그라면 인권운동은 흑백의 디지털이다. 즉 평화의 언어는 포괄적이고 인권의 언어는 분석적이다. 인권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가려지지만 평화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인권은 진실과 정의를 평화는 진실과 화해를 추구한다.
- 평화적 생존권, 평화의 권리 right to peace, peace is a human right

#### 인권과 발전

- 발전권은 다른 모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이다.
- 인권에 기초한 발전전략 Right-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국제관계가 필요하다.

#### 인권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지배라면 인권은 개인 및 소수자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 인권에 기초한 법의 지배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증진
- 인권침해의 야기하는 국내외적 정치경제 구조에 대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권침해에 대해 일국 정부와 국제공동체의 연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 4) 피해자주권 victims' sovereignty

- 인권적 원칙/접근이란 정치적 고려 이전에 철저히 인권괴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국가 주권이 아닌 피해자의 주권) 국가간 인권외교(양자, 다자)에서 인권이 도구화 정치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적이고 인권기준에 따른 일관성 있는 감시와 비판이 수행되어야 한다.
- 북한 인권 접근을 지렛대, 냉장고 또는 부메랑 효과

### 5.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전략

#### 한국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역할

- 시민사회 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념투쟁을 극복하고 공통의 이해에 기반한 연대의 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인권(만) 남한인권(만) 다른 인권단체의 '공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운동전략을 수행할 주체형성과 관련이 있다.
- 남북한 인권문제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 개선은 탈북자 보호, 국내 정착 탈북자의 인권보호와 국가보안법 칠페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는 북한인권(만) 다른 단체와 정부가 긴장 또는 갈등 관계에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사회 내에서 공론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다양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인권(만) 다른 재정적 정치적 투명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와 보수우익 시민단체의 정치적 재정적 후원에 힘입은 활동방식은 오히려 북한인권개선에 장애가 될 수 있다.
- 해외 (미국, 유럽, 일본 등) 및 국제 인권단체와의 종합적 연대 전략이 필요하다. 유엔 활용 포함.
-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의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유엔 활용 포함.
- 주체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일단 네 집단 중심으로 집단적 주체를 꾸릴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인권문제를 적간접적으로 다루는 단체 (좋은벗 (●) 둘째, 남한인권문제를 주로 다루어온 단체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셋째, 통일 및 평화운동 단체, 넷째, 시민사회단체 (여연, 환경연 등)

상호존중과 협력  
연동 - 통합적

#### 한국 인권운동의 구체적 실천 전략

- 일본과 미국의 인권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국내 거주 유럽연합 국가의 대사관을 상대로 한 설명회 (특히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
- 유럽연합의 대북 인권정책 로비 (서울과 브뤼셀)
- 2004년 유엔 인권위 결의안 초안 작성
- 국가보안법 칠페가 북한 인권개선의 첫 단추
- 국내 수용 탈북자의 인권개선
- 중국 등 해외 탈북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지원
-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중대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지원 프로그램 활용
- 유엔 인권기준에 따른 통일된 남북한 인권보고서 작성
-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주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중국, 북한, 남한, 일본, 러시아, 몽고, 태국, 필리핀, 미국 등)
-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 캠페인 - 사형제도, 식량권, ...
- 남북한 공동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가인권위원회
- 남북대화 담당자에 대한 인권교육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안보위원회, 적십자 등)
- 동북아시아 또는 6자회담 당사국 인권/시민사회 포럼

## 5.1.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 개입의 틀 - 다자간 포괄적 메커니즘

- 한반도 평화협정(국내·양자, 평화중심)에 다자간 접근인 헬싱키 과정(국제, 다자, 복합적)과 대인저뢰금지운동(유엔, 시민사회주도)의 모델을 한반도에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
- 유엔의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 북한만 별도로 다루는 것 보다는 다자간 틀에서 참가하는 모든 나라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이 정치도구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시민사회/인권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부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 이외에 시민사회의 마인드와 자격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 시민사회 주도의 동북아 공동체 - 베이징 6자 회담을 헬싱키 과정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 시민사회(한국, 동북아 및 6자 해당국의 시민사회)는 6자회담에 어떻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가?
- 인권의 부메랑효과와 냉장고론?

### 1) 종합적/포괄적의제 (package, multi-dimensional comprehensive agenda)

- 정치적 신뢰구축(안보)(Basket I)와 '경제, 과학기술, 환경 분야 협력(경제)'(Basket II)과 '인도주의와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Basket III)
- 인권은 Basket III에 포함.

### 2) 다자간 인권외교 (multi-lateral human rights diplomacy)

- 인권외교는 인권을 이용해 국익을 증대하려는 현실정치와 외교적 수단을 이용해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인권운동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 유엔이 마련한 국제인권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회의는 양자에 비해 국제 인권기준의 규범적 구속력의 효과가 더 높다. 인권이 정치적으로 도구화되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 보편적 다자기구인 유엔 인권기구를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는 유엔의 인권기준과 인권관련 권고안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부메랑 효과)
- 보편적 다자간외교(유엔) 또는 제한적 다자간외교(6자 회담)에 인권의제를 어떻게 주류화할 것인가?

### 3) 다자간 이해당사자 대화(multi-stake holders, multi-track diplomacy, new diplomacy)

- 통일, 외교, 안보 영역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 안보(국가), 경제협력(기업), 인권(유엔과 시민사회)의 삼각틀이 시민사회의 개입을 제도화 할 수 있는 효과적 장치가 될 수 있다.

## 5.2. 주요 행위자의 역할

### 1) 북한

- 북한의 2003년 인권 결의안에 대한 대응: 강한 반발과 선택적 수용
- 북한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수용: 식량권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수용 및 활용.
-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 지속.
- 유엔 인권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 2) 한국 - 정부, 시민사회(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

#### 정부

- 한국정부의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인권외교 철학, 정책 및 전략이 없다. 2003년 유엔 인권위 북한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전략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무전략에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인권외교의 원칙에 따른 중장기적 인권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평화통일 및 안보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위원회(NSC)-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 -의 정책에 인권의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북한인권을 남북대화와 다자(6자, 유엔)에서 어떤 입장과 전략으로 다룰 것인가?
- 인권-통일-평화 관련 비준 국제법에 따른 국내법의 정비...

#### 국가인권위원회

- 유엔을 통한 다자간 틀 속에서의 남북한 인권대화
- 유엔의 인권기준에 관한 북한의 인권교육 지원/주도: 동북아 인권교육 워크샵

### 3) 국제사회

주요 정부

- 미국 : 정부(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의회, 시민사회, 인권단체, 성크탱크, 언론 등
  - 일본 : 피남자와 재일동포의 차별과 인권침해, 정신대, 일본 시민사회 지원과 연대
  - 중국 : 관변 및 민간 평화운동 단체와의 연대
  - 러시아 : 헬싱키 인권감시 단체...
  - 유럽연합 : 북한과 유럽연합의 인권대화, 6자 회담과 유럽연합의 참여?

국제 인권단체

- 북한 인권문제(만)을 다루는 외국의 인권단체에 북한 인권문제를 맡겨줄 것이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Human Rights Watch,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같은 종합적인 국제인권단체의 동원과 연대가 필요하다.

#### 4)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

유엔 인권위원회 (CHR)

- 2004년 유엔 인권위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탈북자 인권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 특별보고관, 실무분과 등의 북한 방문?
  - 유엔인권위와 인권소위원회에서 다루어 진(지고) 있는 인권문제 : 정신대(일본군 종군위안부), 국가보안법, 양심(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한국전 거창 양민학살, 북한인권(탈북난민), 일본인 피납자 등.

주제 182  
- 182 주제 182  
주제 182

이권 소위원회 (Sub-CH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

- 인권고등판무관과 북한의 포괄적 대화
  - 기술적지원(technical cooperation) 프로그램

의원조약감시위원회

- 북한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보고서 심의 (2003. 11 월)
  - 북한의 아동권 보고서 심의 (2004년 1월) 등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 북한 탈출 난민(탈북자)의 지위 부여
  - 탈북자의 인권보호

암스트롱 유엔 사무총장 특사 암스트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국제적십자사(ICRC)?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 담당관실, 북한인권관련 해외자료집, 2003년 4월
  - 국제앰네스티, 2003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북한)
  - 노옥재, 북한인권의 성격과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북한인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03년 6월
  - 모가미 도시카,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조진구 옮김, 소화, 2001
  - 박종규, 중미인권분쟁, 새로운 사람들, 2001
  - 백병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세계 언론의 보도태도, 2003년 앰네스티 국회모임 특별세미나 발제문, 2003년 6월 11일
  - 외교안보연구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2-3>, 2002
  - 이봉철, 현대인권사항, 아카넷, 2001
  - 이원웅, 북한인권문제: 국제사회와 동향과 정책적 제언, 2003년 앰네스티 국회모임 특별세미나 발제문, 2003년 6월 11일
  - 이원웅, 북한인권문제와 국내외 운동현황,
  - 이원웅, 북한 인권문제의 현안과 정책적 대응방안
  - 이원웅, 탈북주민의 인권 보호 및 국내 수용방안,

- 이장희, 이라크 전쟁, 북핵 위기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 2003년 앤데스터 국회모임 특별세미나 발제문, 2003년 6월 11일
- 커스틴 셀라스 지음,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오승훈 옮김, 은행나무, 2003
- 정육식,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북한인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03년 6월
- 정육식,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모색, 통일연구원, 2000
- 죄의철,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모색, 통일연구원, 2001
- 죄의철,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1
- 한국인권재단 염음,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1, 2, 제주인권학술회의 2001, 사람생각
- 허만호, 협력적 적대관계에서의 북한인권: 개입과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북한인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03년 6월
- 이성훈, '북한인권결의안의 도전이자 기회', 한겨레 왜냐면, 2003년 5월 ?
- 한겨레 21, 북한인권 특집, 456호 (2003년 5월 1일)
- 인권운동사랑방 하루소식 2003년 3·4월 59차 유엔인권위
- 좋은벗들, '북한인권문제의 실상 관점 및 해법' <한반도 전쟁위기와 평화적 해법> 2003년 8월, 정토회

증언들은 청취권을 행사했다. — 이 유희원은 문제를 아는 사람이다.

증언서에 포함된 사건

민족 +

국내 대기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

이전 증언에서

Coalition

증언서 10·11일 성과 발표

제작권 침해를 행사했다.

제작권 침해 - 증거

증명

증명

증명서 기록

증명서 기록

증명서

증명서 기록을 증명하는 증명서

증명서 기록

증명서

증명서 기록

증명서 기록

증명서 기록

증명서 기록

증명서 기록

증명서 기록

증명서 기록, 서류 증명

증명서 기록 (증명서 기록)

증명서 기록 freedom house

증명

## 특별세션 - 북한인권과 동북아 평화

1. 북한인권 문제는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민족문제에서 국제문제로 확대되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인권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 고문, 사형제도 등 기존의 시민정치적 권리 이외에도 강제노동 기아 등 생존권 그리고 탈북자의 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대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라는 변화된 상황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용한 외교'를 보완하는 새로운 인식과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2. 북한 인권은 주권의 절대성과 인권의 보편성, 인권-통일-평화의 상호연관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 등 인권이론과 인권운동의 쟁점을 포함한 복합적 문제이다. 북한의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피해자 주권론의 인권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전쟁반대, 인도주의적 지원, 한반도 통일과 평화 체제 구축과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인권문제를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북한을 민족보다는 국가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국내법의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한편 북한인권 문제를 계기로 동북아,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인권평화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적극적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3. 북한인권은 유엔의 활용 이외에도 장기적 제도적 차원에서 인권을 포괄적 안보와 경제협력 의제과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다자간 이해당사자 (multi-stake holders)의 틀 속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다룰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정부는 인권 철학과 평화의 비전에 입각한 일관성있고 현실적 합한 중장기적 북한 인권정책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간에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시민사회 내에도 인권단체, 통일 및 평화운동 단체 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시급히 요청된다. 북한인권, 북한 인도주의지원 및 남한의 인권문제를 다루어온 단체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관련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보다 적극적인 국제연대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023

08월 26일

## 북한인권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유엔 인권위

— 이성훈 leesh@paxromana.int.ch  
— 차례

- Actors:

1. 들어가면서 - 유엔 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의 의미
2. 북한인권 공론화를 꺼리는/우려하는 이유
3. 북한 인권문제를 보는 상반된 관점
4. 어떻게 통합적 관점을 만들 것인가?
5. 실천을 위한 공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제안
6. 북한인권문제 효과적 접근을 위한 기본 원칙
7.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 1. 들어가면서

#### 1. 유엔 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의 의미

- 국내/민족문제(특수, 양자)에서 국제문제(보편, 다자, 유엔)로 확산
- '어떻게 볼 것인가(관점, 이론)'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실천)'로 전환
- 한국사회내 인권의 주류화(국가, 기업, 시민사회(좌, 우)...)
- 한국 인권 국제연대운동의 다양화, 다변화 - 발전/분화/분열?

2.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 - 유엔 인권위 나라별 인권침해 결의안의 문제, 왜 지금, 북한만? 만약 부결되었다면? (설마 아니면 북한)
3. 인권외교의 두 얼굴 - 인권은 수단이자 목적, 국익(안보와 경제)과 인권
4.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 민족, 체제 - 적국, 우방, 민족...
5.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접근할 것인가?

#### 2.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 - '당연과 당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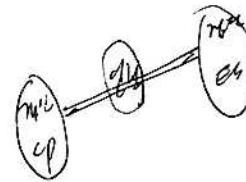
1. 서방/미국의 제재나 침공의 빌미를 제공한다.
2. 북한의 반발로 효과가 없거나 남북대화에 역효과를 초래한다.
3. 한국내 반북한 정치세력이 의도적으로 악용한다.
4.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다.

#### 3. 북한 인권문제를 보는 상반된 관점

|                 | 유보/반대  | 찬성   |
|-----------------|--|--|
| 특수성             | 북한인권을 서구의잣대로 '자본' '개인' 판단해서는 안된다                 | 유엔의 국제기준으로도 북한의 인권은 심각하다.                        |
| 환원주의<br>(개인·개인) | 북한인권은 경제문제, 미국의 경제봉쇄정책 때문이다                      | 주체사상과 전체주의 체제자체에서 기인한다. (무기개념)                   |
| 정치화             | 정치적 목적(체제봉괴, 반정부)으로 북한인권을 이용하지 말아야               | 정치적 목적/이념적 이유로 북한인권 현실 외면하지 말아야.                 |
| 남북대화            | 남북대화 진전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 북한인권이 대화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
| 자료와 정보          | 인권실상을 확인할 수가 없다.<br>(접근권)                        | 기존의 조사와 정보로도 충분하다.<br>북한당국은 접근권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
| 개선 수단           | 다양한 개선의 수단이 북한내에 없다.<br>(시민사회 부재)                | 국제사회의 지지와 압력이 필요하다.<br>'Gangnam Style'           |
| 시기상조론           | 따라서 나중에 상황과 조건이 '무르익을 때. 지금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경제협력에 초점. | 지금 당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다리는 것은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외면과 방기이다. |

질문

- ① 유엔·비영리기관 - 인터넷 활동
- ② 개인 - 경찰(세관)
- ③ 인터넷 - 경찰/검찰 - 경찰
- ④ 인도주의 - 경찰 - 경찰
- ⑤ 양국 - 대사 / 주재 - NGO



#### 4. 어떻게 통합적 관점을 만들 것인가?

- 정부는 3 종잣대 (국내, 북한, 외국) 기업은 경제만능주의, 시민사회는 좌우편향
- 좌우편향은 민주주의의 상식 - 좌우의 날개로 만드는 기우뚱한 균형
- 좌편향은 '적의 적은 나의 친구' (반미, 반정부) 우편향은 '적의 친구는 나의 적' (반공), '친구의 적은 나의 적' (친미)의 심리적 기제에 매몰
- 시민사회 좌우편향이 공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 좌우편향 모두 '찬성 아니면 우리의 적' (소극적, 부정적)에서 '반대 아니면 우리 편' (적극적, 긍정적)으로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 '극우극좌'는 배제하고 편향성은 대화와 협력으로 극복해 분열이 아닌 유기적 역할분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 인권은 정치의 진흙탕에 굴러가는 수레바퀴로 좌우 균형이 (보수와 진보,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필요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인권단체) 뒤에서 밀어주어야 한다 (정부)
- 인권은 통일과정에서 장애나 장식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인권은 통일과정에서 지렛대의 수단이 아닌 나침반의 목적 역할을 해야한다.
- 인권없는 평화/통일은 공허하고 평화/통일없는 인권은 맹목이다.

#### 5. 실천을 위한 공통의 기반 Common Ground 을 만들기 위한 제안

- 먼저 현실을 인정하자 - 원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더라도 북한 심각한 북한 인권침해 인정이 공통의 출발점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재확인) All Human Rights for All
-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 - 보편적 인권 감수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모든 인권 피해자에 대한 차별없는 연민과 공분 - 피해자에게는 국적이 없다. 한국, 북한, 이라크, 미국 등)
- 공동의 의제와 전략 개발 - 정부, 인권단체, 기업 등 이해당사자 대화
- 효과적 역할 분담 - 각자의 역할에 충실
- 실천가능하고 이슈부터 사명감과 끈기를 가지고

#### 6. 북한인권문제 효과적 접근을 위한 기본 원칙

- 원칙적 principle - 인권의 기본원칙 (보편성, 상호불가분성, 상호의존성, 피해자중심)
- 긍정적 positive/affirmative 생산적 건설적 대화와 비판 ↑ (soft line ↓)
- 종합적 holistic -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발전권, 평화권, 민주주의 권리 (불가분성)의 동시접근
- 통합적 integral 상호의존성 (평화, 발전과 인권)
- 전략적 strategic 양자와 다자(유럽연합, 아시아, 유엔 등)의 결합
- 균형적 balanced 북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
- 상호적 mutual 남북인권을 동시에 접근, 선택적 정치화 극복
- 통일성 common 같은 기준으로 남북한 인권접근
- 융통성 flexible 보호와 증진, 예방적 접근의 혼합
- 전술적 tactical 인권단체 주도로 접근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이슈부터 (②. 공동체)
- 다차원 multi-dimensional 한국내 (시민사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남북간, 다차원에서...

#### 7.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 유엔 인권기준에 따른 통일된 남북한 인권보고서 작성
-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중국, 북한, 남한, 일본, 러시아, 몽고, 태국, 필리핀, 미국 등)
- 공동의 인권문제에 대한 캠페인 - 사형제도, 식량권.
- 남북한 공동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관련 사업 지원
- 남북대화 담당자에 대한 인권교육 (법무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안보위원회, 적십자 등)

- 지역인권 Regime / forum

enjoy: 11/1

Afghanistan

## 메모

북한인권의 현실과 북한 정부의 인권정책

북한인권 자료 및 보고서 - 통일부, 미국 국무부, 국제앰네스티, 미네소타주 인권변호사회, 인권감시(미국) 등

유엔과 북한인권 - 자유권 조약 보고서, 인권소위원회 결의안 97, 98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방문,

북한과 유럽연합의 대화

북한의 인권단체

2003년 59차 유엔 인권위 북한결의안 분석

- 결의안의 내용과 문제점
- 결의안 추진 과정 (북한정부, 한국정부, 유럽연합(프랑스, 영국, 그리스 등), 미국, 중국, 일본 / 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 크리스챤세계연대, 국제앰네스티, 등))
- 북한인권 관련 발언 분석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영국 등)
- 표결 시 발언 분석
- 표결 내용 분석
- 결의안 채택의 의미 및 향후 전망

(from, changeable time)  
from → 언제? 어떤?  
언제 → 언제.

- 언제

· 언제 알면 → 어떤?  
언제 알면? 알면.

언제.

언제: 언제 ← 언제: 언제 알면 어떤? (언제 알면 어떤?) = 언제

언제: 알면 언제:

· 언제 알면 언제 ← 언제: 언제 알면 어떤? (언제 알면 어떤?) = 언제

언제: 어떤! (언제 알면 어떤!) = 언제

"Right Day" - "soft law" - "States One" - "ym"

- 23/23 - OHCHR  
- Voting: UEM - UEM 22?  
- MIN LABOR (AI)? - POK, DPRK by

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LIMITED

E/CN.4/2003/L.31/Rev.1  
15 April 2003

Original: ENGLISH

COMMISSION ON HUMAN RIGHTS

Fifty-ninth session

Agenda item 9

f Yes 28  
f No 10 . absent → 1  
f Ab 14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Austria, Belgium, Bulgar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Monaco\*,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draft resolution

2003/...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affirming that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have the obligatio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implement the obligations they have assumed under the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Mindful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In accordance with rule 69, paragraph 3, of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functional commission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GE.03-13364 (E) 150403

[ → Today, (was), (Chin or s) ]  
→ Zimbabwe :

. Why very short?  
abstained 1/1?

*Taking note of the reports sub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encoura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ntinue to submit its reports in a timely manner,*

*Taking note also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uman Rights Committee concerning the report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submitted to them,*

*Expressing its deep concern at the precarious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in particular the prevalence of infant malnutrition which, despite recent progress, still affects a significant percentage of children and their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Reaffirming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its entire population,*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the effective continuation of the process of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nd noting the recent progress in this respect,*

*Desiring to promote a constructive approach leading to concrete progres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 *Expresses its deep concern about reports of system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a)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ublic executions,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reasons,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and lack of respect for the 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b)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on access of everyone to information, and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c) *The mistreatment of and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children whose particular needs are not sufficiently taken into conside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welcoming, in this regard, reports of the preparation of a law on physically disabled persons;*

(d) Continued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Access*  
2. Notes with regret that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not created the necessary conditions to perm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verify these reports in an independent manner and calls upon th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se reports and these concerns urgently, including:

CAT  
CAT, CERD

(a) By ratifying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it is not yet a party,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by implementing its obligations under the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it is a party, namel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right of everyone to be free from hung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nsuring that all necessary measures are undertaken to this end;

(b) By providing all pertine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above-mentioned issues;  
(c) By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Human Rights Committee; ICESCR & CEDAW

(d) By refraining from sanctioning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moved to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for humanitarian reasons, and refraining from treating their departure as treason leading to punishments of internment,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the death penalty;

(e) By cooperating with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cooperating without restriction with the thematic procedure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levant to the situ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the Special Rapporteur on religious intolerance,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s well as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f) By resolving, clearly and transparently, all the unresolved questions relating to the abduction of foreigners;

(g) By adhering to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ur standards;  
3. Is also deeply concerned about reports of a precarious humanitarian situation;

የኢትዮጵያ ፭፻፯፻

በ/፩/፲፻፯፻/፳/፻፻፻፻

የኢትዮጵያ የንግድ ሚኒስቴር  
የኢትዮጵያ አገልግሎት ማመልከት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conditionality

4. Calls upon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humanitarian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agencies, have free and unimpeded access to all pa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order for them to ensure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is delivered impartially on the basis of need, in accordance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5. Reques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tinue to urge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ensure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especially food aid, destined for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and that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ctors are allowed to travel throughout the country to monitor this distribution, and to ensure the respect for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asylum;

6. Requests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engage in a comprehensive dialogue with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a view to establishing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to submit hi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at its sixtieth session;

7. Decides to continue its consideration of this question at its sixtieth session under the same agenda item as a matter of high priority.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ንግድ ሚኒስቴር  
የኢትዮጵያ አገልግሎት ማመልከት

የኢትዮጵያ የንግድ ሚኒስቴር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ንግድ ሚኒስቴር

የኢትዮጵያ የንግድ ሚኒስቴር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 የንግድ →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 የንግድ →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የኢትዮጵያ

# 북한 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2004. 3. 10 (초안)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자유법안 상정에 주목하고 있다. 2천만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재중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북한 인권 중에서도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전쟁이 아닌 협상과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현재 심의 중인 북한 자유법안은 북한체제의 변화와 이를 위한 북한내부의 혼란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남북한 관계를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안의 목적성과 의도에 비추어 궁극적으로는 북한인권개선에 역행 할 수 있다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

## 1.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 1) 북한인권 문제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식량난 해결

북한 인권의 가장 주요한 선결과제는 식량난으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의 해결이다. 식량난 해결과 식량권은 기타 기본권 보장에 필수적인 요인이며, 생존권에 대한 보장 없이 인권 신장이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극히 공허하다. 따라서 제반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식량난을 해결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경제재건을 위한 개발구호가 확대되어야 한다. 기아문제가 해결될 때 기타 기본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현 단계에 필요한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일이다.

### 2) 국제적 고립보다 포용정책을 택해야 한다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정책은 북한의 위기의식을 부추기며 북한 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군사력 증강을 불러온다. 북한의 군사력 의존은 국민경제의 악화 및 북한 사회의 인권의 질을 떨어뜨린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및 각종 국제원조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북미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수교가 이루 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듯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도 인내력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3)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사전 예방 조치 필요

탈북자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에 기인한 결과이다. 식량난과 인권 개선 없이 난민촌 건설이나 기획망명 등의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모든 난민 문제의 해법이 그러하듯 북한의 경우에

도 사건의 발생 이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이 더 효율적이다. 식량 지원은 북한 인권 개선에 필수 조건이 될 뿐 아니라, 탈북자 발생을 줄이는 사전 예방의 효과가 있다. 경제제재나 전쟁 등의 강경 정책은 더 많은 식량 난민을 발생시킬 뿐이다.

#### 4)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분리할 수 없다

미국의 일부 강경론자들은 핵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전쟁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제한적 폭격조차도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전쟁은 남북 주민 전체 인권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인권 개선이란 명목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인권 개선은 반드시 평화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이라크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 정부는 이라크 해방법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자유법안이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거나,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전쟁은 물론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 조차도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확보를 통한 대외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이다.

## 2.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 ○ Sec. 3은 이 법안의 전제가 되는 조항으로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된다.

먼저 Sec. 3의 북한 실태에 대한 설명의 상당 부분은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 중 사실로 확인된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식량난 문제는 그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국제적 인권단체인 AI(국제앰네스티)도 밝힌 바 있듯, 식량난 문제는 현재 북한의 취약한 경제구조<sup>1</sup>,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구 소비에트권의 붕괴,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또한 남북 분단 상황의 지속으로 인한 군사비의 과다 지출, 미국의 오랜 경제제재도 현재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식량난의 간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최근 몇 해 동안은 국제사회의 식량원조마저 줄고 있어, 북한 내 취약계층에게 공급돼야 할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WFP(세계식량계획)는 밝히고 있다. (물론, 낙후한 북한경제와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배경들에 대한 고려 없이, 남과 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 오히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진실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 Sec. 4는 이 법안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 이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우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이 법안에서 찾기 힘들다.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현재 6자 회담을 통해 다뤄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이와 같은 평화적인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소 과정에 저해가 될 요소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1 경작지의 부족, 토양의 황폐화, 열악한 기후 조건 등은 북한 자체적인 식량 생산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Amnesty International Report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Starved of Rights :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AI Index : ASA 24/003/2004)

- 이 법안은 민주정부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자칫 미국이 북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방향은 한반도 주민이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남북 주민들의 대화를 존중하고 격려해주길 기대한다.

## ○ 1장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국제기구의 조사와 이에 대한 북한의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Sec. 101은 국무장관이 CIA 및 여타 정보기구들과 협조해 북한의 감옥과 수용소 및 탈북자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 활동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공정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 개선의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 감옥과 수용소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이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2002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 남한 등이 조속히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른 조사를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바란다.

## ○ 2장 북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탈북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식량난이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고 식량난을 해소하는 것이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재중 탈북유민에 대해 최소한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는 한편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북한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시정하는 것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2장은 난민 수용소의 설치 및 미국 입국 보조 등을 주된 조치로 하고 있어 탈북자 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계적이다. 나아가 Sec. 211(House Bill/Sec. 210 of Senate Bill)에서 명시하듯,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북한 탈출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및 정부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북한 주민의 탈출을 유도하고 북한 내부의 불안을 의도하는 행위로 이해되기 쉽상이다. 따라서 이는 북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한계를 넘어, 국가 간의 ‘자주권 존중’이라는 국제법 질서에 위배된다.

## ○ 3장 북한 민주화 향상 조치

- Sec. 301과 Sec. 302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루 24시간으로 연장하고, 북 주민에게 라디오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의 화해협력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비방 중단을 약속하고, 대남, 대북 라디오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 Sec. 303은 동북아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PSI와 관련해선 국제법적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이를 자신에 대한 군사적 봉쇄로 해석해 강력히 반발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위험이 높다.

## ○ 4장 북한과의 교섭

- Sec. 401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모든 협상에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의제로 추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다.

- Sec. 402는 북한 경제 제재 및 경제 원조를 시장 중심의 근본적인 경제의 변화, 마약이나 위조지폐 거래와 같은 국제적 범죄 행위에 가담한 북한인의 처벌 등과 연계하고 있다. 6자 회담을 통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원조 제공이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Sec. 402의 규정 또한 핵 문제의 해결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핵문제의 해

결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Sec. 403은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유 제공이나 경수로 건설 같은 비인도적 지원도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WFP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직도 일정한 제약이 있긴 하지만 투명성과 관련 북한의 식량 분배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sup>2)</sup>, 식량 부족 상태의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부족이 식량난 해소와 지원된 식량의 공정한 분배에 제약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중유 및 경수로 건설 등의 지원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무조건적인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투명하고 적절한 식량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은 법안 스스로가 목적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 3. 우리의 제안

우리는 북한 인권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성을 배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정치적 자유의 신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인권 개선, 민주주의의 향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과 관련국들이 상호 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진작될 수 있다.**

**넷째, 이후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미 의회는 한국 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사전에 폭넓은 교류와 대화를 가지기를 바란다.**

2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30 October 2003.

2004. 3. 인권운동연구소 월례광장(가안)

일시 : 3월 27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 인권운동연구소 세미나실(혹은 제2의 장소)

주제 : 북한 인권 문제와 남한 인권운동

목표 :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적 인식 공유, 남한 인권운동의 실천방침 도출.

대상 : 사랑방 상임/자원 활동가, 연구소 세미나 참가자(기타 외부 참여자에게도 공개)

#### 주요 논점

1. 북한의 인권문제는 무엇인가?

1-1. 무엇이 심각한(혹은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인가?

2.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기본 관점은 무엇인가?

3.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3-1. 미국의 nk자유법안에 대한 평가

3-2. EU식의 인권대화

3-3. 유엔의 역할

4. 남한 인권운동이 해야할 역할은 무엇인가?

4-1. 국제사회에 촉구해야 할 사항은?

4-2. 남한 정부에 촉구해야 할 사항은?

4-3. 남한 인권운동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사회 : 류은숙

발표 : 이창조(30분)

토론 : ?

객석토론 :

인권문제 - 이론적  
인권문제 - 실증적

## 北 인권문제의 성격과 해결방향

2004. 1. 29. 창조리

### 1절. 기본 전제

#### 1. 인권 '문제의 보편성'

지구상의 어떤 사회든, 완벽한 인권보장체계를 갖고 있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어느 사회에나 인권문제는 존재한다.

자본주의체제든, 사회주의체제든, 각 나라마다 처한 ①개별적 상황과 조건에서 비롯되는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한편(북한의 식량권 문제, 남한의 주거권 문제 등), ②체제와 무관하게 권력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인권문제(예컨대, 수사·구금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도 존재한다.

#### 2. 인권 문제 '판단의 잣대'

현재 일국의 인권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준은 '국제규범(국제인권규약)'이다. 즉, 세계인권선언과 양대 인권규약 등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인권기준과 규범이 일국의 인권상황을 판단하는 1차 척도로 적용되고 있다. 북한도 이미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해 있고, 국제인권규약의 의의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국제인권기준과 규범의 정신을 존중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성 국제인권규법과 기준을 '절대시'할 수 있는가? 이 또한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사상한 채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규범을 절대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현 인권체계의 기본원리가 자유주의적 시작에서 정립된 것이라면, 이를 곧이곧대로 사회주의체제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sup>1)</sup> 또한 상이한 사회운영 원리를 갖고 있는 체제를 놓고, 어느 일방의 운영원리를 '인권적'인 것으로, 다른 일방의 운영원리를 '반인권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sup>2)</sup>

결국 일국의 인권상황은 '국제규법적 시작(보편성) 및 '체제 원리(특수성)라는 두 가지 잣대를 동시에 놓고 판단되어야 한다.

#### 3. 문제제기의 '공정성'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공히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에 앞서 문제제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권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보편'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요구를 제시하는 것은 인권기준의 '기계적 적용'일 따름이다. 인권은 '수학적 공리'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잣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과 조건을 고려하면서 적용되는' 잣대이어야 한다(이른바 최고의 형식규범이라 할 '법'마저도 동일한 현상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강자와 약자'의 구별, 역사적·사회적·국제적 조건, 체제가 갖는 특수성 등을, 인권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선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 북한 사회의 인권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특히 식량권에 있어),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제기의 주체와 그 과정을 따져볼 때, 거기엔 순수한 의도(북한 인민의 인권신장)보다 '정치적 의도'(북한 체제의 붕괴)가 깊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맥락의 문제제기로는 온전한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1) 이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약의 성립과정 및 그 논리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결론에 다다라야 할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를 배제한 채, 국제협약의 존재를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수준이다.

2) 3절에서 상술

또한 거론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의 여러 부분은 지구상의 다른 국가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때문에 유독 북한만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하다. 예컨대, 국제사회가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 등 세계 각국을 공히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 문제제기가 ‘정치공세’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에겐 “인권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신념뿐 아니라, “인권문제는 공정하게 제기되어야 한다”는 균형의식 또한 나란히 요구된다.

#### 4. 인권실현의 ‘두 가지 조건’

어느 사회의 인권문제든, 그것은 내인과 외인의 결합물이다. 즉, 일국의 인권문제는 ①국제적 질서 ②국내적 질서라는 두 가지 조건과 관련된다. 세계인권선언 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질서와 국제적 질서가 공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북한인권문제의 원인을 오로지 ‘사회적 질서’(체제 내부)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으며, 이는 체제붕괴 의도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처한 ‘국제적 질서’(대미 긴장상태 등)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특히 ‘외인’이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sup>3)</sup> 즉 북한 체제의 경직성은 체제 내부적 요인과 대외적 긴장관계가 종합된 결과로 파악되어야 한다.

#### 5. 문제해결의 방향

일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체제 운영의 주체’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질서’와 ‘국제적 질서’의 문제를 구분한 가운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각각의 질서를 조성하는 주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일국의 ‘사회적 질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양대 국제인권규약의 1조가 ‘자결권’ 조항인 것은, ‘사회적 질서’의 조성 책임이 1차적으로 해당국 인민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떠한 명분의 ‘인도적 개입’(외부의 개입)도 그 사회 인민들에게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지 못했으며, 거꾸로 제국주의의 팽창과 지배로 귀결되어 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ex. 1945년 한국의 해방, 2003년 이라크 침공 등). 자본주의 체제든, 사회주의 체제든, 어느 일방에서 다른 일방에 대해 체제의 변경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정치공세’로 변색될 수밖에 없으며(실효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며), 그러한 주장의 논리적 귀결은 ‘무력개입’이다.

만일 해당 체제가 인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인민들은 스스로 ‘체제의 개혁’ 나아가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결국, 인권보장을 위한 체제 변경의 문제는 해당국 인민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몫(인민의 자결권 영역)이지, 외부의 개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측면은 북한인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적 질서’의 조성이다. 북한인민들을 옥죄어 온 대외적 사슬을 푸는 일은 북한 당국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예컨대, 북미간 상호불

3) 60년에 가까운 미국과의 대치체제는,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열쇠’다. 특히 오랜 기간 북한의 우군이었던 동구 사회주의권마저 몰락한 이후, 미국과 1대1로 대면해온 북한사회가 팽팽한 ‘긴장과 동원’의 체제로 조직됐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90년대 이후 갈수록 노골화되는(최근 이라크 침공을 통해 더욱 현실화됨) 미국의 침략위협은, 북한사회를 전시동원체제에 버금가는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으리라는 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가 ‘개인’보다는 ‘결속’을,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인권의 보장’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북한 체제 내부만을 겨냥하는 ‘문제제기’에 동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권 수단화’에 몸 대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침조약(평화조약)의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쟁위협 해소를 위한 노력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선차적인 과제이다.

요컨대, 북한 인민들에게 있어서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확보'(구체적으로 전쟁위협의 제거)는 인권신장을 위한 '사활적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오로지 '내인'으로만 해석하면서, 모든 책임을 '정권과 체제'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 아니며, 이러한 시각은 논리적으로 '인도적 개입'(한마디로 전쟁)의 입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북한 인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다.

## 2절.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현 상황

### 1. 북한인권 이슈의 국내외적 확산과 수구진영 공세의 강화

- 2003년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공식의제가 됨.
- 국내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 및 행사 확산.
-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마치 '인권운동'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도 되는 양,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저의를 문제삼아, 남한 내 진보운동, 인권운동진영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sup>4)</sup>

### 2. '미국 주도' 문제제기의 성격

현재 북한인권 문제제기의 핵은 '미국'이며, 여기에 미국 내'민간단체들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내 민간단체, 그리고 국내 수구진영들이 대북 인권공세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형세다.<sup>5)</sup> 그러나 이들의 문제제기는,

- ① 대북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인권을 빙자한 '체제붕괴'전략-북한민주화론)
- ② '체제의 특성'을 '인권문제'로 비화시킴으로써, '문제'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 ③ 북한사회 내 이성적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북한 인민들은 스스로 변화와 혁명을 이뤄낼 수 없는 존재라는 식의 인식이 널리 유포되고 있음)
- ④ 문제제기의 소스가 여전히 일방적이며 불분명하다는 점(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주요 소스는 망명자 혹은 탈북자들임. 그러나 이미 체제를 이탈한 이들의 증언 가운데 아직 겸증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함<sup>6)</sup>)

4)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왜 외면 혹은 침묵하고 있는가? 필자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남한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운동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운동을 펴야 한다고 본다"(허만호, '북한인권, 진보세력이 나서야', 2003. 4. 29. 한겨레)

5)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럽연합'의 주도 아래 채택되었다고는 하나, 결의안 채택 이후 유럽연합 측으로부터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음. 여전히 대북 인권공세의 핵은 '미국'이며, 이는 '미국정부-미국 민간단체-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내 민간단체'를 축으로 이뤄지고 있음.  
- 6월 6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북한의 종교적 인권실태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을 미 정부에 촉구.  
- 7월 16일, 미국 민주주의기부재단(NED),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탈북자 3명과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에게 '올해의 민주주의상' 수여.  
- 11월 21일 미 상원, '북한자유법안' 상정. 미국의 이지스 재단, 미국 전역에서 북한자유법안 지지 서명운동 돌입.  
- "미국 전국민주주의재단(NED)의 지원을 받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국내 단체는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두 단체로 이들 단체는 지원자금을 북한 인권관련 학술회의 개최, 소식지 발간, 탈북자 정착 지원등을 위해 사용해온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두 단체는 미국 국무부가 24일 발표한 2002-2003 인권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 '미국 정부는 NED에 25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NED는 두개의 한국 NGO에 이 자금을 다시 제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 및 보고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연합뉴스, 2003. 6. 25)

6) "최근 탈북자들 사이에서 정치범 수용소등 북한의 실상이 과장, 왜곡된 채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일부 탈북자가 행한 미의회 청문회에서의 정치범수용소 관련 증언에 대해 '실상을 왜곡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탈북자들의 진술 전부를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3. 6. 9)

"북한에서 활동중인 세계식량계획(WFP)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의 시골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인육을 내다판다는 언론 보도는 일부 기자들이 주민들을 매수하여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평양에 주재하는 베지트 캠그伦 WFP

⑤ 자국의 인권문제는 전혀 거론치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인권문제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 즉, 미국 주도의 문제제기는 그 '의도'(정치공세)와 '내용'(문제의 왜곡), '형식'(공정성을 잊은 일방적 문제제기) 등에 있어서 온당치 않으며, 따라서 올바른 '결과'(북한인민의 인권신장)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재의 문제제기는 인권보장의 주요 조건 가운데 하나인 ⑥ 국제질서의 구속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 3. 과제 : 문제제기의 정상화

따라서 남한 인권운동진영의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는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시각을 정상화하는 일이다<sup>7)</sup>.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①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관한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시킴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를 온전히 '인권'의 장으로 되돌려 놓는 것 ② 북한인권의 '문제지점'을 바로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한반도를 둘러싼 대결지형의 강화가 양쪽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인권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 인권문제는 남한 인권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③ 남북 공동의 반성적 접근이 아니면,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3절. 북한의 인권론에 대하여

### 0. 차이의 확인

북한은 근본적으로 남한과 다른 체제이며, 체제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 인권을 보장하는 원리 역시 상이하다. 이 점을 전제하지 않는 한, 북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 주도의 대북 인권공세는 북한의 각종 체제운영 원리를 '인권유린시스템'으로 치환함으로써, '북한체제=반인권체제'라는 단순 등식을 유도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태도가 아니며, 오로지 '인권'을 빙자한 '체제붕괴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북한이 표방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원리들은 인권보장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원리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이며, 원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다.

국내외 논자들이, 북한의 인권론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집단주의'(개인의 기본권 부정), '인권의 보편성 부정', '프롤레타리아독재', '사법권의 종속'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 1. 집단주의의 원리

'집단주의=개인의 기본권 부정'으로 보는 시각은, 그 자체로 '집단주의'에 대한 물이해(혹은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내세우는 집단주의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집약된다. 그러나 집단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은 후자의 슬로건을 슬그머니 생략한 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만을 부각시키며, "북한의 인권이론은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sup>8)</sup>한다. 그러나 북한은 '인민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생명처럼 떠받드는 체제이며, 당연한 논리

국장은 '우리는 문명사회 속에 있다'면서 '이같은 일(인육 판매)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1997. 5. 2)

7) 그동안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던 '좋은벗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좋은벗들'은 스스로 '비정치적'인 접근을 내세우고 있으나, 문제제기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올바른 관점을 견지하지 못할 경우, 이들의 '순수한 의도' 또한 기존의 대북 정치공세에 복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8) 이원웅, <북한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2001.

적 귀결로서 '개인'의 주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은 '집단주의'가 그 자체로 인권보장과 양립가능함을 주장한다. 북한의 인권론이 '개인의 자주권'을 강조한다는 점<sup>9)</sup>, 헌법(체제운영 원리의 총화)을 통해 '사생활의 보호'와 '가족의 보호' 같은 개인의 고유한 영역을 인권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0)</sup>는 점 등이 그 실례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받지 않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자유주의'적 인권원리와 '인간이 사회와 분리되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파악하는 '사회주의'적 인권원리 가운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인권보장의 원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어느 원리를 선택하느냐는 해당 인민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요컨대, '집단주의' 원리를 들어 북한을 '반인권체제'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 2. 인권의 보편성

북한의 인권론에 대한 주요 비판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한다"는 것 즉, 북한이 인권을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서 해석<sup>11)</sup>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론자들도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sup>12)</sup>'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인권보장의 보편성'이 아니라, '특정(서구식) 인권기준의 절대화(보편화)'를 부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북한이 '상대적 잣대(인권기준의 상대성)'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공세가 '자본주의적 가치와 원리'에 대한 일방적 강요로 비춰져 왔기 때문이다.<sup>13)</sup>

상이한 역사·문화·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게 동일한 규범과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인권의 '보편화'인지 의문이며, 그러한 기계적인 보편론은 실제로 인권의 '역사성'과 해당국 인민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세계인권선언 제2조), 그러한 권리의 실현은 '차이의 인정'으로부터 출발할 때 실질화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인권의 종대한 원칙이어야 한다.

## 3. 인권의 계급성

인권의 보편성 논쟁과 관련한 두 번째 논점은 인권의 '계급성' 문제이다. 우선 권리의 향유에 있어 원천적인 차별과 배제를 정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어긋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 … 인간쓰레기들에게 인권이란 말은 당치 않다. 사회주의 사회는 결코 반혁명분자들에게까지 선의를 베푸는 초계급적인 사회가 아니다"(1995. 6. 24. 로동신문 사설, '참다운 인권을 위하여')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원천적 배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후적 배제

9) "개인은 집단을 떠나서 자주성을 가질 수 없지만,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자주성을 견지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자주적 권리가 유린된다면 사회집단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인권이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주권인 것이다"(<새시대 정치학원론> 중에서)

"인권을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1981. 6. 25. 김일성)

10) 실제로 사생활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다. 사회주의 체제보다도 훨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조차 사생활보호는 형식적 법조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반테러법 관련 조치들이 이를 입증한다.

11) "지구상의 나라는 각이한 전통과 민족성,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개 나라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도 해당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2001. 3. 1. 조선중앙통신)

12) "인권은 한 나라의 범위 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장되고 옹호되어야 할 인류공동의 신성한 권리이다"(안명혁, '미제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자', 1990)

13) "각이한 전통,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을 무시하고 어느 한 나라나 나라들의 그루빠의 가치를 다른 나라들에 내려 먹이면서 그 가치를 '보편적으로 공인된 기준'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우리는 특히 인권의 정치화와 이종기준, 뿐만 아니라 정치의 적용을 반대한다"(1995. 3. 9. 로동신문).

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북한에서 말하는 적대분자가 ①‘태어나면서부터 규정받는’ 혹은 ‘이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뒤에도 유지되는’ 신분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신분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적대분자’라는 것이 ②‘특정한 행위’에 따라 사후적으로 규정되는 존재라면, 그것은 일반적인 ‘범죄자’에 해당한다<sup>14)</sup>.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범죄는 발생하기 마련이며, 범죄자에 대해 일정하게 ‘공민권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상례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적대분자’의 개념이 후자에 해당한다면 문제삼을 이유가 없으며,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인권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덧붙여, 북한이 ‘민중의 권리’와 ‘권리의 계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권리의 향유주체를 특정 계급에 국한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의 인권’론이 갖는 허구성을 강조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권리의 실질적 향유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갖는다’라는 자유주의의 인권론도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4. 프롤레타리아독재와 사법권의 미독립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한다. 따라서 다당제나 권력분립과 같은 자유주의적 원칙보다는, ‘인민주권’의 원칙을 중시하며 운영되는 사회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바로 ‘독재’의 원리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식의 비난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개념에 대한 천박한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비난이다.<sup>15)</sup>

중요한 것은 어떤 장치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면서 ‘인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 ①자유주의 체제는 ‘다당제와 3권분립’<sup>16)</sup> 등의 장치를, ②사회주의 체제는 ‘인민의 소환권’ 등을 중요한 장치로 내세우고 있다<sup>17)</sup>. 둘 모두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이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해당국 ‘인민’의 몫이다.

요컨대 ‘프롤레타리아독재’ 혹은 ‘사법권의 미독립’ 등을 이유로 북한을 ‘반인권 체제’로 규정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체제운영 원리만을 ‘인권보장 체계’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 5. 소결

북한의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와는 상이한 원리에 입각해 인권의 실현을 꿈꾸는 체제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리’들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다.

14)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적인 척도는 사회계급적 토대가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의 문제”(송지영, <북한의 우리식 인권외교 연구>, 2002)라는 지적은,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대중’에 애국적 자본가 계급도 포함됨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대분자’라는 지위는 ‘나면서부터 갖는 신분’이 아니라 ‘행동에 따른 사후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5)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유주의 국가를 ‘민주주의’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독재’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개념에 대한 무지 혹은 의도적 왜곡일 뿐이다. 노동자 농민의 대표자가 (혹은 정당이) 의회에서 단 하나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하며, 모든 입법과 사법행위가 친자본적으로 이뤄지는 의회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남한의 경우, 해방 후 어느 시기로 부르주아 독재 시기가 아닌 때는 없었다.

16) 자유주의 체제에서 3권분립(특히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는 까닭은 역설적이다. 이는 의회와 정부에 대한 인민의 통제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인민의 의사를 벗어나더라도 이를 인민이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권력에 의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17) 인민에 의해 선출되고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언제든 소환의 대상이 되는 사법부와 형식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사실상 지배세력의 논리를 대변하는 사법부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인민의 권리를 충실히 담보해 줄 수 있을까? 원리적으로는 전자의 경우가 훨씬 ‘인민적’이라고 생각된다.

## 4절. 북한 인민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

### 1. 전쟁위협으로부터의 공포

현재 북한 인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문제다. 첫째는, 직접적 인 생존의 위협이며, 둘째는 대내적 긴장 및 동원체제의 고착화 문제다. '전쟁' 혹은 '전시동원체제'는 인권보장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조건이며, 따라서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은 북한 내부의 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선결적 조건이다.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①'사회적 질서'(인권보장을 위한 국내적 조건)와 ②'국제적 질서'(국제적 조건)가 공히 요청되며, '전쟁위협의 제거'는 ①과 ②의 조성을 위한 기본 전제에 해당된다.

### 2. 식량난과 생존권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선 '내인'과 '외인' 두 가지 진단이 제출되고 있다. 첫째는 '체제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진단이며, 둘째는 '대북경제봉쇄 및 자연재난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진단이다.<sup>18)</sup> '북한이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해 구조적으로 식량난과 경제침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sup>19)</sup>는 '내인론'에 의하더라도, 결국 국 식량난 및 경제문제의 배경에는 대미관계라는 외인이 상수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량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해야 할 일은 '북한체제의 변경'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들이 생존을 유지하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로부터 북한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봉쇄의 해제'다.

### 3. 식량난에 결부된 인권문제 - 이주노동의 문제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인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빈발해 왔다. 국내에서 생존권을 담보해줄 수 없는 여건이라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이주노동을 허용해야 하며, 그 행위를 사법적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북한 인민들의 중국 이주노동이 '난민' 문제로 정치쟁점화되고, 한편으로는 체제붕괴전략의 일환으로 부추겨짐에 따라<sup>20)</sup>, 오히려 중국 내 북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중국 내 이주노동에 대해 중국정부가 강제송환을 비롯한 강경조치로 일관하게 되고, 탈북자에 대한 북한 내 처우가 악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탈북자 문제'를 '난민 문제'로 정치쟁점화한 것에 있다.<sup>21)</sup>

현대 사회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노동은 국내이동과 맞먹는 수준으로 일상화되고 있으며, 탈북자 문제 역시 '이주노동자 문제'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미국이 나서서 '탈북자 지원' '난민 인정' 등의 정치공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남북한 등 관련 당사국들이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18) 여기서 첫 번째 진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실제 9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지, 그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해선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19) "북한의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군사비 지출비율은 약 3분의1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2.7%, 미국이 4% 미만이다.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침체, 그리고 인권문제는 ~수령 절대주의사회와 군사독재 체제가 놓은 구조적인 문제 일 뿐이다"(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장, '포기할 수 없는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한겨레, 2003. 8. 5.)

20) 미국정부가 입안하고 있는 '북한 자유법'이 대표적이다.

21) "중국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비정부단체(NGO)들의 이른바 '기획 망명'이 탈북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NGO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5일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난민 대량발생사태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NGO들이 기획망명을 통해 탈북자문제를 국제 인권문제로 부각시키는 등 국제 공론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중국에 남은 훨씬 더 많은 탈북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탈북자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감시망과 강제 송환이 부쩍 강화되고 있다"면서 "중국 공안의 단속강화는 NGO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상당수 NGO 조직을 봉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3. 7. 5>